



연례 재정보조 신청서

학부모님과 보호자 여러분께;

이것은 여러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연례 가족/세대 신청서입니다. 이 하나의 신청서에 전체 학년도 대부분의 학교 비용 보조 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현장학습 또는 프로그램, 조기 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급식등을 무료나 인하된 비용으로 받기위해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하는 것들은 예외입니다. 이 신청서는 자녀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Finance Office (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수준에 관한 서류가 없이는 학교의 교직원, 코치, 교원단, 또는 스태프들이 어떠한 비용이나 회비를 면제해줄수는 없습니다.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재정 지원프로그램은 전 세대 구성원의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게됩니다. 동거인, 친척, 그리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여, 여러분의 세대 구성원은 모두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서류의 목록에서, 여러분의 세대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소득세 또는 BHA 주택 보조:

1. 만약 2018 년도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대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의 IRS 증명서(IRS transcript)를 제출해주시요. IRS 에서 발행하지 않은 (10-40 form 은 받지않습니다) 어떤 다른 세금보고 서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800-908-9946 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irs.gov/> 를 방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 "Get Your Tax Record"라고 되어있는 것을 눌러주시요. 그후 "Get Transcript Online"를 눌러주시요. 이 서류는 무료이며 신청하고 5-10 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Brookline Housing Authority (브루크라인 주택부서)의 소득 결정/계산 워크시트 (BHA 빌딩메니저에게 가장 최근의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BHA 주택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제출해야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기타 소득: 만약 있다면 가장 최근 자료의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오:

3. 만약 외부모라면 위자료나 자녀지원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자녀지원 서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https://www.mass.gov/orgs/child-support-enforcement-division> 를 방문하시거나 617-660-1234 로 전화해주시요;
4. 보조 국민 연금 수입 (SSI) 과 장애인 수당 수입;
5. 실업수당과 퇴직금;
6. 과도기 재정보조 서류와 혜택 (매 8 월에 발행되거나 부모의 요청에 따라 발행됨);
7. 가족 지원: 선물, 기부, 가족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혜택 - 가족의 재정 보증을 제출하십시오.

기타 주택 보조: 결정사항 통지서의 사본이나 재정 보증을 제출하십시오.

8. 섹션 8 주택 할인권;
 9. 주택 보조 (예를 들어, 임대료없는 주택,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것) - 가족 재정 보증을 제출하십시오.
- 위탁아동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며 함께 사는 가족이나 양육부모의 소득이 있는 세대의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자로 여행중인 가족들 --
 - 이민비자가 아닌 비자 (예를 들어 B, F, H, 또는 J 비자의 경우)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민비자이고 비자 신청과 함께 재정 보증을 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 I-864, I-134);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누락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격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면, 편지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처리기간이 약 4 주정도 걸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에 주세요: <https://www.brookline.k12.ma.us/>

감사합니다.

Mary Ellen Normen Dunn,
Deputy Superintenden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Tel: (617) 730-2425

financialassistance@psbma.org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333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2019-2020 School Year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부모/보호자 성	전화번호	주소
다른 학부모/보호자 이름	다른 학부모/보호자 성	전화번호	위와 다를 경우 주소
이메일 주소			

피부양자/자녀 이름	성	2019/20 학년	2019/2020 학교 이름

가족 인원수(전체 성인+ 전체 피부양자)

제출해야하고 받아들여지는 서류 (가족의 연간 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것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포함된 것에 표하세요
1. 2018 년도 IRS 증명서 https://www.irs.gov/ (10-40 세금 서류가 아닌것)	
2. 브루클라인 주택처 수입 결정/계산 워크시트 이것은 BHA 주택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제출해야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3. 위자료와 자녀 지원 합의서	
4. 보조 국민 연금 (SSI)과 장애인 수당	
5. 실업수당과 퇴직금	
6. 과도기 재정보조서류와 혜택	
7. 가족의 도움: 선물, 기부, 세대에 속하지않는 사람으로부터의 금전적 도움	
8. 섹션 8 주택 할인권	
9. 주택 보조 (예를 들어 임대료를 내지않는 주택,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는것)	
10. 위탁아동에 관한 서류	

필요한 서류가 없이는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보내지 마십시오; 보내신 원본은 반송되지 않습니다. Finance Office(재정부) 에서 무료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한 후에 파기됩니다.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비밀유지가 되며 다른 사무실과 공유하지 않으며 학생의 파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중 성인이 신청서에 서명해야합니다.

이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모든 수입을 보고했음을 확인(약속)합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제공된 정보를 확인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저의 아이는 혜택을 잃게 될것이며 저는 기소될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명: _____ 성명: _____ 날짜: _____

보낼 곳: Mary Ellen Normen Dunn, Deputy Superintenden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Public Schools of Brookline, 333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 02445